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48 발의연월일: 2024. 11. 5.

발 의 자:조승환·강민국·이성권

곽규택 · 김태호 · 김종양

권영세 • 권영진 • 유용원

임이자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신청을 통해 개개인에게 필요 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이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바, 공공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찾아보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최근 국민의 정보화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전달할수 있는 모바일 기기와 디지털서비스가 일상화됨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기존의 제공 방식을 확장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정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이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 방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공공서비스 맞춤 안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1항).
-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2항).
-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제3항).
-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자로부터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사전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사항을 대상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고 동의받도록 함(안 제12조의3제4항).
-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목록의 등록・관리・활용,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에 필요한 자료의 연계, 자격요건의 확인 등을 위해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5항 등).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의3(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및 빈곤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이하 "자격요건"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이하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를 위하여 이를 신청한 자(이하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라 한다)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금융·부동산·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가 이를 명

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3.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의 공공서비스목록의 등록·관리·활용,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에 필요한 자료의 연계, 자격요건의확인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및 자격요건 등의 확인,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신청철회 방법,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제1항 중 "공공서비스 제공"을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로, "등록시스템을"을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 등을"로,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 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 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 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 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사 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가족관 계등록·국세·지방세·금융· 부동산·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전동의에관하여는 제42조제1항을 준용한다.
- <u>④</u>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신

제12조의3(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및 빈곤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는 요건(이하 "자격요건"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이용할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이하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라 한다)할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를 위하여 이를 신청한 자(이하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라 한다)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 관등이 보유한 주민등록・가족 관계등록・국세・지방세・금융 ·부동산・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 스 맞춤 안내의 대상이 되는

청은 이 조 제2항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 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행정 안전부장관이 해당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받아야 하는 사전동의로 본다.

- 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 ⑥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공공서비스 목록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 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3.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

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는 사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의 2제1항의 공공서비스목록의 등 록 · 관리 · 활용, 공공서비스 맞 춤 안내에 필요한 자료의 연계, 자격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정 보시스템(이하 "공공서비스 관 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공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 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이 공 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 하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해 당 신청자에게 필요한 공공서 비스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을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기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및 자격요건 등의 확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 역의 통지, 신청 철회 방법, 공 공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운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 공 등) ① -----<u>공서비스 맞춤 안내</u>-------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 등을 -----<u>제공하여야 한</u>다.

② · ③ (현행과 같음)